



2020년 7월 1일자 PCT 규칙 개정사항

2020년 7월 1일자 PCT 규칙 개정사항(1)

- PCT 규칙 4, 12, 20, 48, 51의2, 55 및 82의3 개정 그리고 PCT 규칙 20.5의2 및 40의2 신설
 - 누락된 요소 및 부분의 보완뿐만 아니라, 잘못 제출된 요소 또는 부분의 경우에도 인용에 의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 (선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잘못 제출된 요소 또는 부분을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으로 대체하기 위해(국제출원일에 영향을 미침), 인용에 의한 보완이 실패했거나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됨.

2020년 7월 1일자 PCT 규칙 개정사항(2)

■ PCT 규칙 82의4 개정

- 관청이 불시의 정전이나 예정된 정비와 같은 이유로 그 관청에서 허용된 전자적 통신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의 책임을 면제함.
- 우선권 기간 및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모든 PCT 규칙에 정해진 기한에 적용됨.

2020년 7월 1일자 PCT 규칙 개정사항(3)

■ PCT 규칙 26의4 신설

□ 국제단계에서 PCT 규칙 4.11에 규정된 출원서의 표시사항, 즉 출원인은 PCT 출원이 지정국에서 다음과 같이 취급되기를 희망한다는 표시사항의 보정 또는 추가를 허용함.

-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출원
-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위한 출원

□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 또는 추가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됨.

2020년 7월 1일자 PCT 규칙 개정사항(4)

■ PCT 총회 해석

- PCT 규칙 20.5의2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총회에서는 PCT 규칙 20.5의 2(d)에 따라 인용에 의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으로 보완된 출원의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그 출원에 남아 있는 잘못 제출된 요소 또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함.
- PCT 규칙 20.8(a의2)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총회에서는 수리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상충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관청에서는 출원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으로 보완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의 허락 하에 PCT 규칙 19.4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출원인이 요구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PCT 규칙 40의2)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에야, 국제출원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을 포함하였다거나 인용에 의해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으로 보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위해 그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2020년 7월 1일자 PCT 규칙 개정사항(5)

■ PCT 규칙 15, 16, 57 및 96 개정

- 한 관청이 수납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다른 관청의 수입으로 송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함.
-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수납 관청이 수수료를 송금하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됨.

■ PCT 규칙 71 및 94 개정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 기관의 파일에 있는 특정 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은 국제사무국이 선택관청을 대신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함.
- 2020년 7월 1일 이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리하거나 작성하는 모든 서류에 적용됨.